

국유재산 [] 사용허가
[] 대부 신청서
[] 매수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신청내용	재산의 표시			신청면적 (㎡)	용도	사용·수익기간
	소재지	지목	공부면적(㎡)			
	재산(증권)의 표시					비고 (물납허가일)
	종목명		법인등록번호		수량(주)	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,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
([]사용허가, []대부, []매수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관서의 장등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
	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
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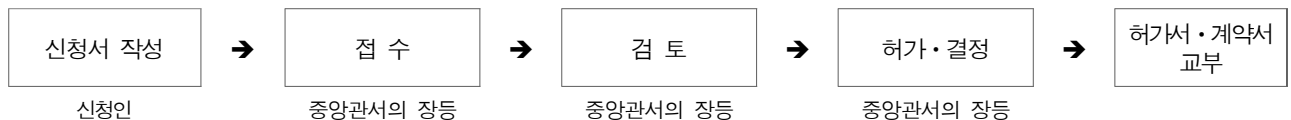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㎡]

신청인 제출서류 (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 우에 한정)	•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: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: 이사회 의사록 사본(원본대조필), 법인인감증명서, 해당 법인 대표이사 의 신분증 사본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-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: 본인의 신분증 사본, 본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 서류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: 이사회 의사록 사본(원본대조필), 법인인감증명서, 해당 법인 대표이사 의 신분증 사본,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	
	※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「민법」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※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 •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(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• 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

※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, 측량,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유 의 사 항

1.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.
2.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.